붙임1

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일·생활 균형 분야

서울시 일·생활 균형 3종 세트 추진계획

현행 법 규정	3종 세트
노동자 신청·청구 시 부여	**의무화·사용권고 등 활성화**
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(여성) 출산일로부터 90일 내 (남성)노동자가 **청구 시** 10일 이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업주가 허용해야 함 · 근거규정 :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	**01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제** 노동자가 10일의 출산휴가 전부 또는 일부 **미청구시**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한 내 잔여 휴가일수 만큼 **휴가 부여**
육아휴직 제도 임신 중 여성,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노동자가 육아휴직 **청구 시** 사업주가 허용해야 함 · 근거규정 :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	**02 육아휴직 사용 분위기 조성** ●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**서면권고(연 1회)** ●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**불이익 여부 정기적 모니터링 (연 1회)** ● 육아휴직 후 **복직자의 업무 적응** 지원을 위한 **교육** 프로그램 마련·추진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노동자가 근로시간을 단축(주 15시간~35시간 근무) **신청 시** 사업주가 허용해야 함 · 근거규정 :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* 공무원의 경우 관련 법규를 적용	**0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권고제**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**서면권고(연 1회)**

추진대상별 일정

서울시	서울시 투자·출연기관(26개)	민간기업 확대
'23. 6. 1.	'23. 9. 1.	'23. 9. 1.